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가.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

-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해소

나.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시유지) 교환건

-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레저분야의 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에 의거 구미상공회의소가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계획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시유지(장천면 상림리 산 81-3번지의 2필지)와 사유지(구미상공회의소 소유 선산읍 노상리 산 6번지의 3필지)를 교환코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 토 지 : 2필지 975.1m²
- 예정가격 : 648,046천원(공시지가 기준)

[교환재산]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 골프장 추진 예정부지(시유지) 교환)

(교환예정 市有재산)

- 토 지 : 3필지 234,376m²
- 예정가격 : 500,246천원(감정가 기준)

(교환예정 私有재산)

- 토 지 : 4필지 568,462m²
- 예정가격 : 393,750천원(감정가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6	569,437.1	1,041,796				6	569,437.1	1,041,796
	1. 매입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975.1	648,046				2	975.1	648,046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568,462	393,750				4	568,462	393,750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3	234,376	500,246				3	234,376	500,246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3	234,376	500,246				3	234,376	500,246

2006년도 교환(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취득) 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 (취득) 시기	교환 (취득) 사유	교환(취득) 재산소유 자	비 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2 소계	취득 (매입)	대지	원평동 1026 원평동 1026-12 2필	687.4 287.7 975.1	687.4 287.7 975.1	481,180 166,866 648,046	2006년 상반기	원 평 1동 사무소 및 문화복지 회 관 산측 부지 매 입	서울.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 3차아파트 303/304 김희송 외 1명	(공시지가)
1 2 3 소계	처분	임야	장천 상림 산81-3 장천 상림 산81-13 장천 상림 산110 3필	36,614 94,771 102,991 234,376	36,614 94,771 102,991 234,376	117,531 273,888 108,827 500,246	2006년 상반기	정주환경 개선계획 에 따른 골프장 조 성 예 정 지	구 미 시	(감정가)
1 2 3 4 소계	취득	임야	선산 노상 산6 선산 노상 산7 옥성 덕촌 산52 옥성 산촌 산263 4필	102,743 202,314 183,273 80,132 568,462	102,743 202,314 183,273 80,132 568,462	93,839 184,780 74,531 40,600 393,750	"	골프장예정 부지(사유지) 와 교환대상지	구미상공 회 의 소 (산구마개발)	
계	토지	처분	3필		234,376	500,246				
		취득	6필		569,437.1	1,041,796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취 득 대 상 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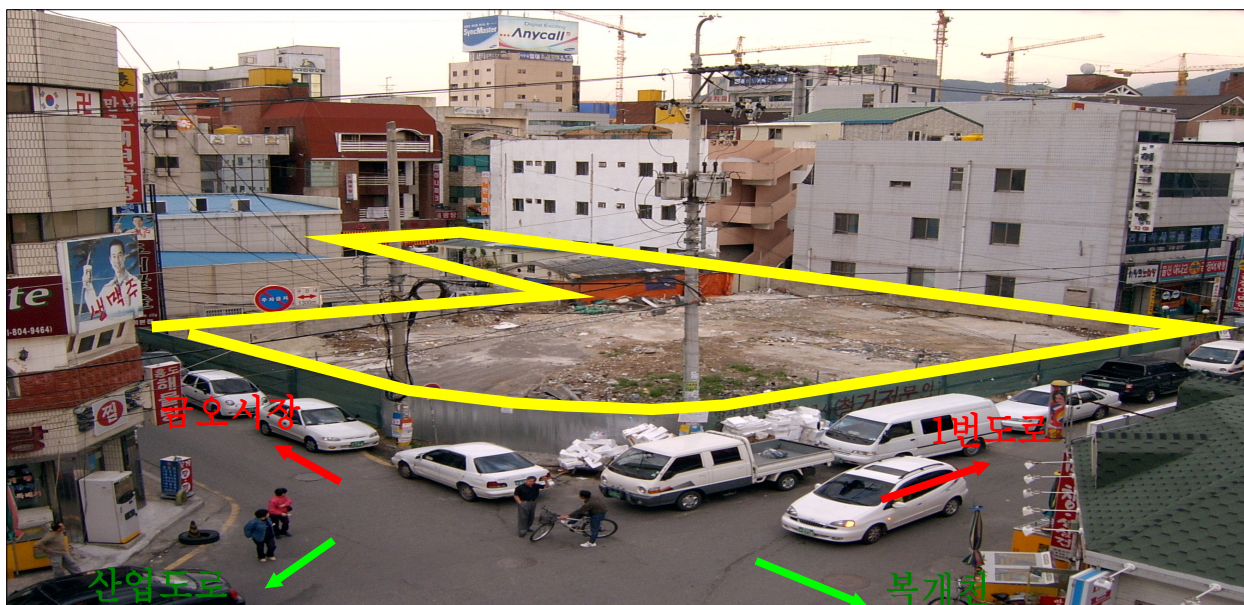
□ 재산의 표시

- ▶ 구미시 원평동 1026번지 지목 : 대지 면적 : 687.4㎡
- ▶ 구미시 원평동 1026-12번지 지목 : 대지 면적 : 287.7㎡

□ 위 치 도



□ 현 황 사 진



교 환 대 상(처분) 토 지

□ 재산의 표시

- ▶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 81-3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36,614㎡
- ▶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 81-13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94,771㎡
- ▶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 110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102,991㎡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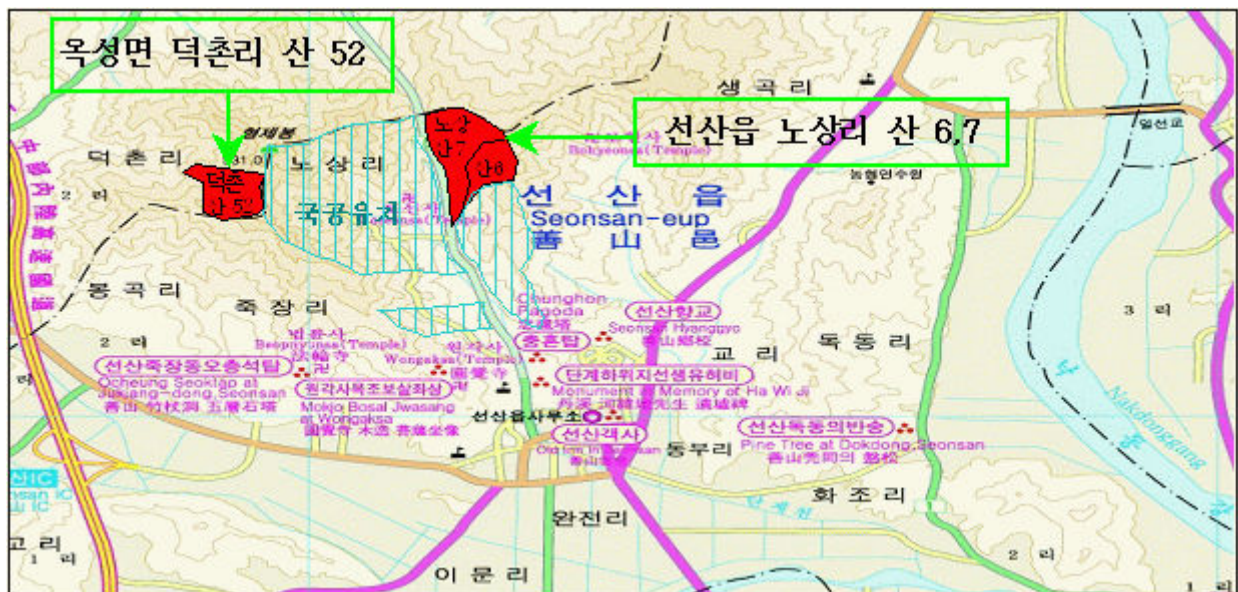


교 환 대 상(취득) 토 지

□ 재산의 표시

- ▶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 6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102,743㎡
- ▶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 7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202,314㎡
-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 52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183,273㎡
- ▶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산 263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80,132㎡

□ 위 치 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교환)

-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②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